

구분	익명처리(또는 비식별처리) 기반의 법제					익명처리+가명처리 혼합기반의 법제
	EU	영국	미국	일본	한국	EU
법률	(1995.10) DP Directive	(1998) 개정 the Data Protection Act	(1996) HIPPA	(2017.5) 개인정보보호법	개인정보보호법	(2018.5) GDPR
법률조항	(전문26조) 익명정보 언급 : 보호조치 적용 배제 EU회원국에게 code of conduct로 위임하고 있음	Directive 인용	비식별 처리된 의료 정보는 법에 적용 되지 않음	(제2조) 익명가공정보와 익명가공정보취급 사업자 정의 (제36조) 개인정보보호위원 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익명가공정보로 가공해야 함	(제3조)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⑦항에 익명처리 언급 (제18조)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 ②항 예외적용	(전문26조) 익명정보 는 GDPR 적용대상 아님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로 간주 (본문제4조) 가명처리 정의 (본문제89조) 공익,과학,통계 목적으로 가명처리로 가능 (제3자제공가능)
Guideline, Opinion, code of conduct	(2014.4) WP29 opinion on Anonymisation Techniques	(2012) Anonymisation: 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-code of practice	(2002) HIPPA Privacy Rule -De-identification (2015) NISTIR De-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	(2016.11) 가이드라인 (익명가공정보편)	(2016.6)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※ 비식별 조치된 정보를 "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" ※ 비식별 조치에 대한 법률 근거는 불명확	(2014.4) WP29 opinion on Anonymisa tion Techniques

법 일부 개정안 발의 현황

대표 발의	법안 명칭	진행 단계	법 적용대상	비식별 관련 주요 내용
김병기 (16.12.08) 더불어민주당	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	위원회심사 (소관위접수)	개인정보 처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제18조제2항제4호 삭제 ② 비식별조치 정의 ③ 비식별정보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가능 ④ 재식별 시 파기· 재처리 의무 ⑤ 재식별 금지 의무 ⑥ 비식별조치 방법, 안전성 조치 대통령령 위임
이은권 (16.09.06) 자유한국당	정보통신망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	위원회심사 (소관위접수)	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비식별 조치 가능 ② 비식별조치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생성 시 파기 또는 추가 비식별 조치 의무화 ③ 적정성 평가단 구성 운영 가능
강길부 (16.12.26) 바른정당	정보통신망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	위원회심사 (소관위접수)	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개인정보 정의 수정 ② 비식별화 가능 적정성 평가 및 평가단 구성 대통령령 위임 ③ 비식별화 정보 이용 중 발생 개인정보 파기 의무 ④ 비식별화 된 정보 동의 없이 이용 및 제3자 제공 ⑤ 재식별 방지 기술적· 관리적 보호조치
윤영석 (17.4.5) 자유한국당	정보통신망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	위원회심사 (소관위접수)	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비식별화, 비식별조치, 비식별정보 정의 ②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 ③ 비식별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생성시 미조치 과태료

법 개정 방향 의견



구분	EU GDPR	법 개정 방향	
		현재	개선안 (비식별 정보+가명처리 혼합기반의 법제)
법령	<p>◆ 익명정보 : 전문 제26조 익명정보에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(The principles of data protection should therefore not apply to anonymous information)</p>	<p>◆ 익명처리 : 제3조 제7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</p>	<p>◆ 비식별 정보 : 법률에 적용 제외 명시 비식별 정보(=익명정보)는 개인정보가 아님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언급 : 제3조 7항을 보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식별 조치(익명 조치)에 관한 상세 사항은 GDPR과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으로 안내
	<p>◆ 가명처리 : 본문 제4조(5) 가명처리는 개인정보를 추가 정보 없이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, 이 경우 추가정보는 식별가능한 자연인과 연결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되고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</p> <p>◆ 공익·과학·통계 등 : 전문 제156조 공익을 위한 유지보전의 목적, 과학이나 역사적 연구의 목적 또는 통계 목적에서의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는 예로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와 같은 적절한 안전조치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거나 더 이상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그 같은 목적을 충족시킬 가능성을 평가하였을 때 시행되어야 한다.</p>	<p>◆ 가명처리 : 규정 없음</p> <p>◆ 통계·학술연구 등 : 제18조 제2항 제4호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(생략)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</p> <p>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=> 비식별 조치</p>	<p>◆ 가명처리 :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내 도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인정보 보호법 내 가명처리를 규정하여 가명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임을 명시 법률에 가명정보의 활용, 법적 성질, 안전한 처리 의무 등 가명처리된 정보의 보호 및 활용의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 시행령 또는 고시를 통하여 가명처리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대한 세부 사항 규정
가이드 라인	<p>◆ Article 29 WP : Opinion on Anonymisation Techniques('14.5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익명처리 : Directive 전문 26조를 근거하여 개념적 정의를 설명 익명처리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	<p>◆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('16.6.30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의 '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'에 대한 안내 비식별은 '익명'과 '가명'을 포함한 개념으로, 의미의 혼동 발생 가능 	<p>◆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식별 조치(익명 조치)의 판단 기준, 처리 기법, 취급 등을 설명 <p>예) 비식별 정보의 정의: 비식별 정보란 추가정보를 통해서도 모든 예상되는 합리적 수단으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</p>